

수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가단15829(본소), 2023가단509857(반소) 판결
[추가물품대금 및 장비제작설치공사대금 · 공사대금 반환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김준성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37,169,1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8. 13. 피고와 C 내화물 불소성공장의 물품구매 및 장비제작 설치공사 계약을 계약금액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최종 납기 2021. 12. 31.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9. 3.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1억 7,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 선별라인 코그넥스 3D 라이선스와 성형라인 조명 및 렌즈 개조 공사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에게 선별라인 코그넥스 3D 라이선스에 대하여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성형라인 조명 및 렌즈 개조에 대하여 1,45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각 견적서를 송부한 사실, ② 원고는 2022. 1.부터 2022. 4.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고, 2022. 4. 7. 피고와 회의하면서 성형라인 조명 및 렌즈 개조비용을 1,45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선별라인 코그넥스 3D 라이선스에 대하여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추가 M/D 비용(1월부터 3월) 3,6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추가 M/D 비용(4월)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131,296,000원[= (1,456만 원 + 5,200만 원 + 3,680만 원 + 1,600만 원) × 1.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완성하지 못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39,259,259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형라인 렌즈 개조비용 14,560,000원을 공제한 124,699,259원(= 139,259,259원 - 14,560,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7,169,18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4, 7,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D와 내화물 불소성공장 이송설비 및 검사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성형라인 하드웨어와 함침라인 소프트웨어 및 PC를 공급받은 점, ② D는 2022. 3. 31. 내화물 불소성공장의 검사시스템을 준공하였고, 피고는 2022. 4. 7. 원고와 회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을 5,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한 점, ③ 피고는 2022. 5. 31.경 원고에게 56,100,000원(= 5,100만 원 × 1.1)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D가 준공 후 성능검사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D도 하자를 전제로 2023. 3. 20.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행을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